



호주에서의 사업을 위한 안내서 Doing business in Australia 2023/24

실용가이드
A practical guide



Contents

| | |
|-----------|--------------------|
| | 실용가이드 |
| 02 | 실용가이드 |
| | 안내서 소개 |
| 03 | 안내서 활용방법 |
| | 호주 소개 |
| 05 | 호주 시장 주요 정보 및 지표 |
| |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
| 08 | 올바른 사업구조의 선택 |
| 11 | 외국인 투자규정 |
| 12 | 호주의 세법 |
| 18 | 고용관리 |
| 20 | 정부 인센티브 |
| 21 | 이민 및 비자 |
| 23 | 지속가능성 관련 법률 및 권고사항 |
| | 이민 및 비자 |
| 24 | 마자르의 지원 |
| 25 | 주요 서비스 |

호주 마자르 마자르 소개

마자르 (Mazars) 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통합 파트너십을 통해 100여 개국에서, 30,000명 이상의 Mazars 통합 파트너십 및 17,000명 이상의 Mazars 북미 파트너십을 합하여 47,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하여 어떤 규모의 업체를 대상으로든 모든 성장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Mazars 호주 법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신뢰받는 독립 기업으로, 호주 현지 기업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 및 자문 서비스를 오랜 기간 제공해왔습니다.

회계, 사업 자문, 아웃소싱, 감사, 세무, 노후 연금, 재무 자문, 인사 관리 및 노사 관계 자문 등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사업 분야에서든지 광범위한 서비스와 함께 가치 중심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갖춘 호주 전문가

Mazars는 호주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팀입니다. 전 세계 통합 파트너십을 통해 100여 개국 47,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하며, 호주 내에서는 브리즈번, 멜버른, 시드니, 투움바에 있는 47명의 파트너들과 3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의 지식이 활용됩니다.

또한 제휴 협력사들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에서 완벽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공유 가치 창출

저희 팀은 모든 고객이 사업을 운영하는 일상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는 것과 공유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원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에서 호주에 진출한 모든 유형의 기업에게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azars의 다양한 서비스가 귀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www.mazars.com.au로 문의 바랍니다.



350+ 명의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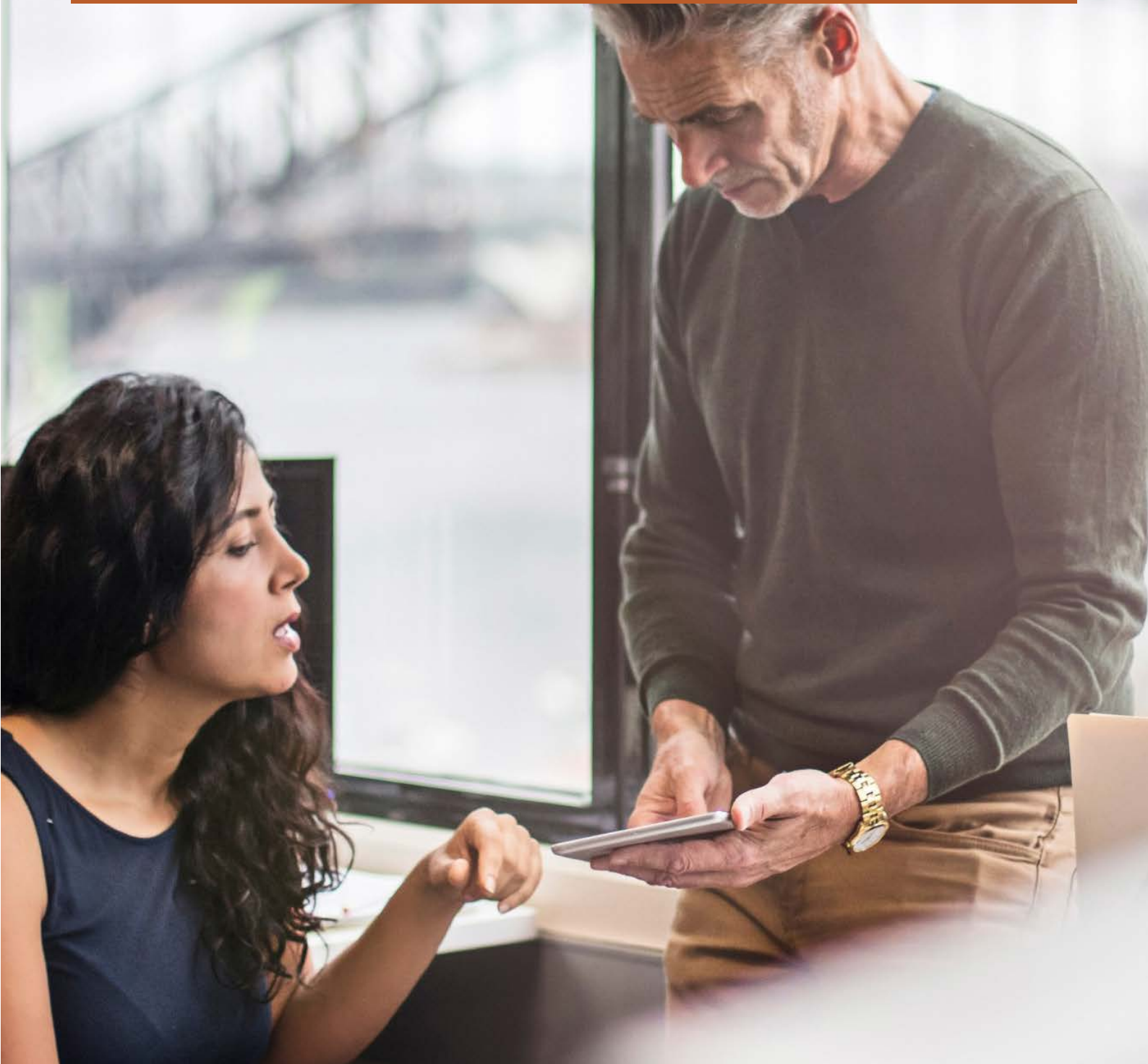
5 개의 지점



47 명의 파트너

*2023년 9월 1일 기준

주요 서비스
안내서 활용방법



안내서 소개

안내서 활용방법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큰 도전일 뿐 아니라 복잡한 의사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는 호주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에 중점을 둔 실용적인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 주요 법률과 규정 등을 강조하였고, 이 안내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정책, 세금 규제, 법령 준수, 보험 규정, 고용법 및 정부 주도 계획 등에 대한 알맞은 질문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이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주할 도전과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조언을 드리며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저희 팀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호주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저희의 전문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호주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호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첫 걸음입니다.



호주 소개

호주 시장 주요 정보 및 지표

호주: 훌륭한 투자처

호주는 사업을 하기에 좋은 법적, 정치적, 금융적, 사회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낮은 세율과 적응이 용이한 규제환경 또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호주 정부는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의학 연구, 운송 및 인프라 등의 산업 영역에 여러가지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지원합니다. 호주는 강력한 경제 기반과 신중한 재정 관리를 바탕으로 2023년에 1.6%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장률은 다른 선진 경제들의 평균인 1.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열두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풍부한 태양력, 풍력, 희토류 및 기타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특별히 재생 에너지를 수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호주는 또한 기술 기반의 경제이기도 합니다. 해당 분야는 현재 1,670억 호주달러 규모이며, 이는 호주 GDP에서 세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밖에도 호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디지털 소비가 많으며, 핀테크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호주는 또한 생명 과학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세계 10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무역 성장

호주는 대외무역이 전체 경제의 45%를 차지할 만큼 고도로 세계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주는 새로운 무역 기회를 활발하게 찾고 있으며, 17개의 자유무역 협정 및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관세와 아시아 시장으로의 높은 접근성은 호주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투자의 관문이 되게끔 합니다. 현재 호주 무역의 80% 정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속 성장 경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Source: <https://www.globalaustralia.gov.au/why-australia/benchmark-report-2023>

숫자로 본 호주

770만 평방 km
면적

동쪽에서 서쪽으로
4,000km
거리

+2,500만 명,
계절에 따라 조정된 노동
인구 1,290만 명
인구

아시아와 대부분 겹치는
3개의 시간대 보유
지표

주요 국제 공항
7개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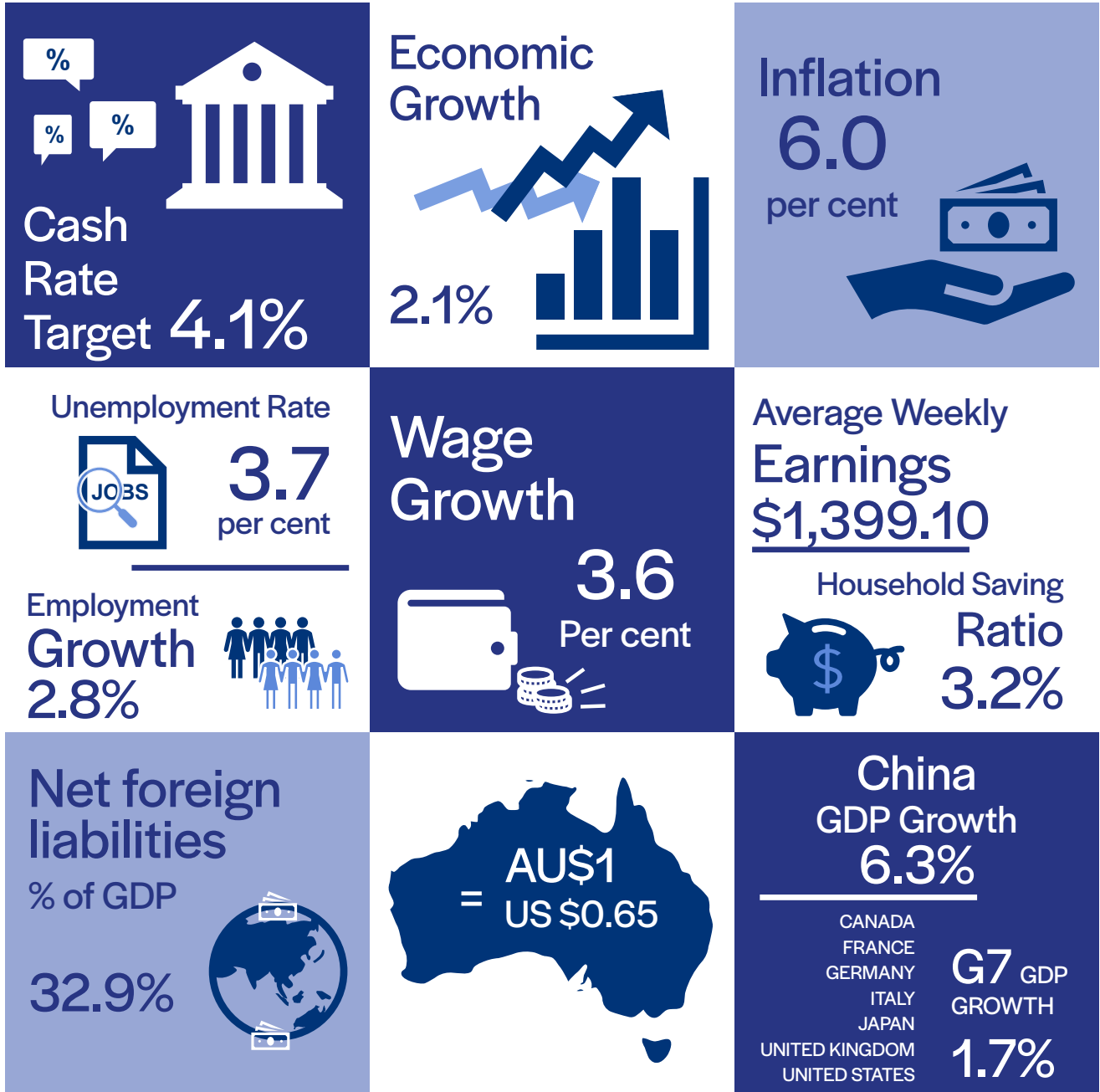
14
세계 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 평가지수

호주 소개

호주 시장 주요 정보 및 지표

호주 중앙 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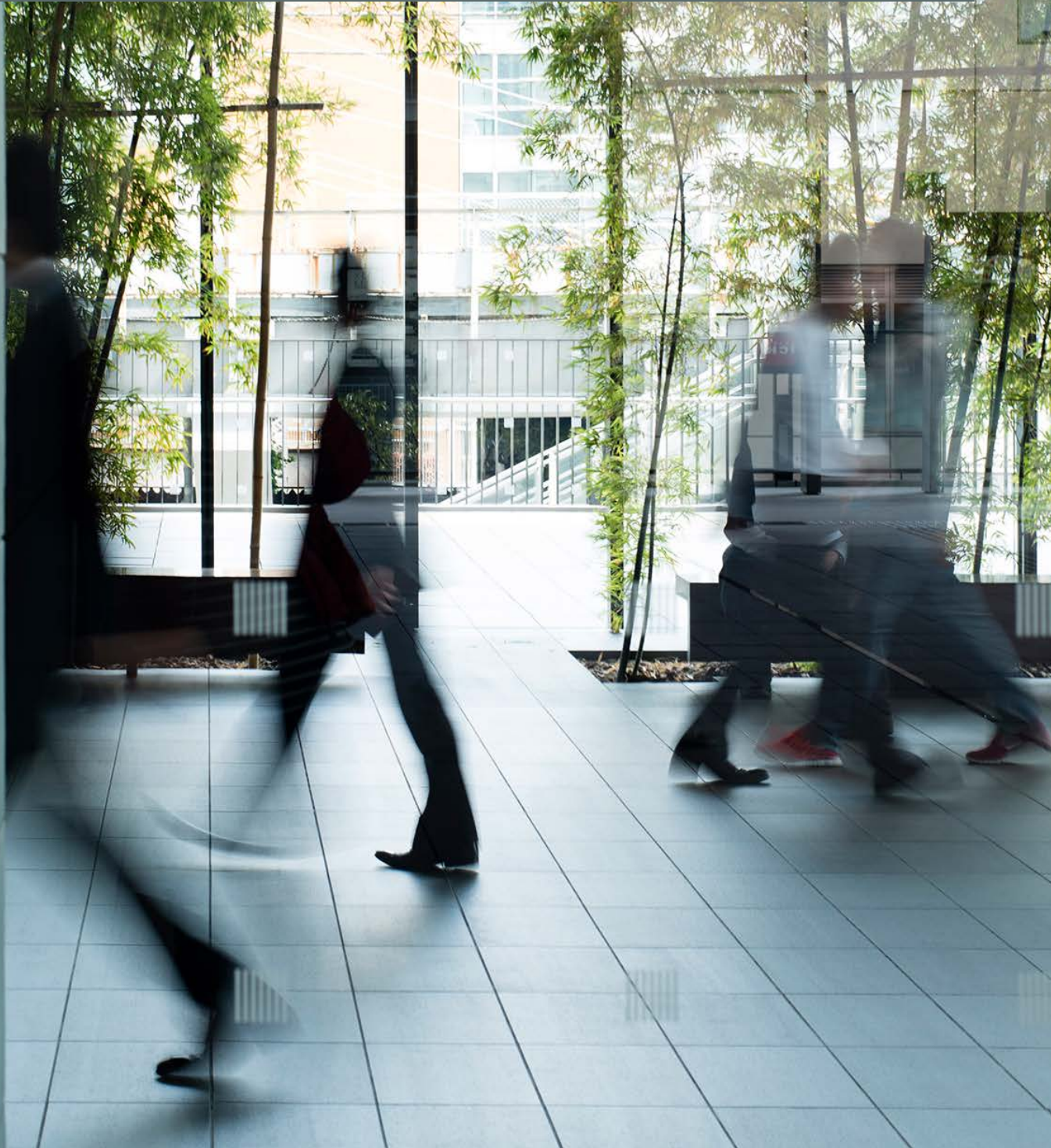
호주의 주요 경제 발전 분야 (2023년 9월)*



출처: 호주 중앙 은행, 2023년

* 위 스냅샷의 데이터는 온라인으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나, 본 가이드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핵심 사항 안내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올바른 사업구조 (business structure)의 선택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핵심 사항에 대한 개요입니다.

사업구조 (business structure)의 올바른 선택

사업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사업구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및 정부 보고 사항;
- 부채/자본 조달;
- 이윤의 본국 송환; 그리고
- 자산 보호.

해외사업자의 사업구조화 방식

호주 사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립 할 수 있으며 종류로는 개인사업자 (sole trader), 합작투자 (joint venture), 파트너십 (partnership), 신탁 (trust), 법인 (company - public or private)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 비공개법인 (자회사); 그리고
- 지점 (branch office).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비공개 법인 (Private company)

비공개 법인 (private company)은 가장 간단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형태는 호주 현지 또는 외국 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이며 주주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a. 비공개 법인 등록

비공개 법인에는 최소한 1명 이상의 호주 이사 (Australian resident director) 및 총 책임자 (Public officer) 1명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 (ASIC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등록함으로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에 설립이 완료됩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는 호주인 및 외국인 이사 모두 임명 전에 호주 기업 등록 서비스 (ABRS –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에서 이사 식별 번호 (DIN –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b. 법인 규모 및 규제

ASIC에서는 비공개 법인을 대형 (large) 혹은 소규모 (small) 법인으로 분류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대형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
- 연말 기준 총자산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 연말 기준 100명 이상의 근로자.

법인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법인에서 통제하는 모든 회사의 수익, 자산 및 근로자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c. 추가 고려 사항

이 외에도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세무 등록을 호주 국세청 (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과 진행하는 데 최대 28일의 근무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호주 은행 계좌를 개설 하는데 필요한 시간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 호주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비공개 법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0 개체 이상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될 경우
- 향후 주식 상장 계획이 있는 경우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지점 (Branch office)

비공개 법인과는 다르게 호주에서 지점을 운영하는 외국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회사는 여전히 호주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호주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만일 호주 내 사업 범위나 활동 기간이 제한적이라면 지점 등록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a. 지점 등록

비공개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점도 ASIC에 등록해야 하지만 절차는 수 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및 구조 관련 자세한 내용을 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잠재적 세금 혜택

호주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호주와 이중 과세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라면 호주 지점에서 발생한 호주내 발생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외국 자본 투자 규정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호주는 외국 자본 투자에 개방되어 있지만 외국 자본의 취득 및 인수에 관한 법률 ([Foreign Acquisition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지 심사 후 국제 거래가 승인됩니다.

외국 자본 투자 심의 위원회 (FIRB –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서 심사 관련 기준을 연방정부에게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호주 재무부 (Australian Treasurer)에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FIRB 승인이 필요한 거래 유형

-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 공지 (vacant land), 비거주 토지를 구매할 경우;
- 자본 투자를 통해 호주 기업에 대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 호주 자산을 소유한 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경우; 그리고
- 개발된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취득할 경우.

외국 자본 투자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RB websi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세법

여느 국가의 세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회사에 대한 호주의 세법은 상세하고 복잡합니다. 호주 진출을 위한 의사 결정 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회사에 관한 세금 관련 주요 질문

a. 세금을 얼마나 내야합니까?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 개인의 거주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득에 얼마나 세금이 부과될지, 어떤 비율로 부과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고, 183 day test도 사용되지만, 주관적인 'resides test'가 호주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호주 세무상 거주 회사 (tax resident)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반면 비거주 회사는 일반적으로 호주와의 이중 과세 협약 (double tax treaty)에 따라 호주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b. 법인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2022 회계 연도부터 (2021년 7월 1일 이후)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25%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 매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이고 불로소득 (passive income) 비중이 과세소득 (assessable income)의 80% 이하인 법인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 다른 모든 법인은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c. 향후 변경이 예정된 세율 및 적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세율인 25% 향후 몇년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30%가 적용되는 법인에 대한 세율 변경 계획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d.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합니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호주 회계 연도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에 대한 연간세금 정산을 진행하지만 모기업의 세금 정산기간과 일치하도록 대체 회계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소득 및 납부 세금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회사 설립 시 신청하여 부여 받은 납세 번호 (TFN – Tax File Number)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호주 사업자 번호 (ABN –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부터 지불 받을 금액에서 47%가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호주의 세법

e. 내 자산은 과세됩니까?

호주 거주 기업은 전세계 자본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CGT - [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자산 비용과 이러한 자산을 처분 할 때 받는 금액의 차액에 부과됩니다.

비거주 업체에게는 과세 대상 호주 재산 ([Taxable Australian Real Property](#))으로 알려진 특정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만 CGT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용된 호주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분이 포함됩니다.

해당 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연간 총 수익이 2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혹은 최대 순자산 가치가 600만 달러 미만인 법인의 경우 CGT 면제 또는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 직원에게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PAYG - [Pay As You Go withholding](#)) 등록을 신청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후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일반적으로 매월 납부하지만 소규모 법인은 분기별로 납부하고 대형 법인은 더 자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g. 다른 원천 징수 세금이 있습니까?

비거주 법인에게 이자, 배당금 또는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
- 로열티: 30%; 그리고
- 호주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에서 지불된 배당금 (unfranked dividends): 30%.

거래 대상 국가 간에 이중과세협정이 존재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를 공제하고 납부할 때까지는 외국 법인에 지불한 로열티 또는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건설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법인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변경 증명서 (variation certificate)가 있는 경우는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 법인이 75만 달러가 넘는 특정 자산 (예: 호주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12.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최종 세율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세무상 호주 거주 업체인 경우에도 필요한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h. 세무상 결손금 (tax losses)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익 손실과 자본 손실은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의 조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의 연속성 테스트 (continuity of ownership test) 통과; 또는
- 사업의 연속성 테스트 (business continuity test) 통과

기억해야 할 것

- 법인의 이사 (director)는 특정 상황에서 미지급 원천징수세에 대한 개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서 (contractor) ABN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 47%를 공제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처가 호주 내에서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호주의 세법

a.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sation rules)

자본이 적은 법인 (자본은 거의 없고 부채 비율이 높은 구조를 가진 법인)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법인은 이자 비용을 공제할 때 제한이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해

조달하는 용자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규칙은 해당연도의 부채 공제금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O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TO website](#)).

b.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해외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non-arm's length parties) 사이의 거래는 독립 기업 (arm's length parties)의 거래와 동일하게 시장 가치 조건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상가격 (arm's length price)을 문서화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간단한 서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TO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TO website](#)).

c. 이익우회세 (Diverted profits tax)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 (SGE - Significant Global Entities)들은 이익우회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호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법인에게 이익을 양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익우회세는 40%의 세율에, 이익 우회로 얻은 세금 혜택에 대한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d. 국제거래 (international dealings)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간 세금신고와 함께 관련 법인의 국제거래 내용을 국제거래명세표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DS)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총 거래액이 200만 호주 달러를 넘는 경우;
- 글로벌 그룹 멤버와 200만 호주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이 있을 경우;
- 과소자본세제의 영향을 받는 경우;

-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 Hybrid mismatch rule의 영향을 받는 경우.

주요 글로벌 기업 (전 세계 그룹 매출액이 10억 호주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다음 조치 또한 적용받게 됩니다

- 회계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CbC (Country-by-Country)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를 연간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ATO에 제출해야 합니다. (ASIC에 이미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그리고
- 늦게 제출하거나 세무 서류에 거짓 진술이 있을 경우 최대 555,000 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 연구개발 관련 세제 혜택 (Research & Development Tax Incentive)

호주에서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를 수행하는 호주 거주 법인은 세금 상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수익이 2,000만 호주 달러 미만인 회사는 세금 상계액의 환급 또한 받을 수 있으며 대형 회사는 상계액의 환급은 받을 수 없지만 미래의 과세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f. 부가가치세 (Goods and Services Tax)

호주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뿐 아니라 수입품에도 10%의 부가가치세 (GST - [Goods and Services Tax](#))가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GST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 (예. 의료용 물품, 수출, 기본 식품); 그리고
- 주택 (residential premises), 금융 상품 (financial supplies) 등 면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 (input-taxed supplies).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호주의 세법

g. 언제 GST를 등록하고 청구합니까?

12개월 동안 호주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GST 과세 및 면제 대상 모두 포함)를 총 가치 75,000 호주 달러 이상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해 GST 10%를 부과하고 이를 ATO에 납부 해야합니다.

GST를 등록한 경우, 구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비용에 포함된 GS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input tax credit). 매입세액공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 활동 보고서 (BAS - [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제출할 때 신청합니다.

호주로 상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GST 이연제도 ([Deferred GST Schem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GST 이연제도를 사용하면 수입 시 지불해야 하는 GST를 월별 BAS 제출 시까지 연기하여 비용을 완전히 상계할 수 있습니다.

GST 이연제도를
이용하려면, BAS 신고
및 GST 납부를 월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개인세 관련 주요 질문

호주에서 개인세는 세무상 거주자, 임시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로 분류되어 결정됩니다.

a. 세금을 얼마나 내야합니까?

호주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자 (일반적으로 호주 거주자와 결혼하지 않은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호주 원천소득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용관련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합니다.

2024 회계 연도에 거주자와 임시 거주자는 아래의 비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과세 소득 | 세금* |
|-----------------------|--|
| \$0 - \$18,200 | 없음 |
| \$18,201 - \$45,000 | \$18,2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19센트 |
| \$45,001 - \$120,000 | \$5,092 + \$45,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32.5센트 |
| \$120,001 - \$180,000 | \$29,467 + \$12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37센트 |
| \$180,001 and over | \$51,667 + \$18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45센트 |

*상기 비율은 국민 건강 보험료 (Medicare Levy, 과세 소득의 2%)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Medicare로 알려진 호주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참고: 민간 의료 보험 (Private hospital cover)에 가입하지 않은 고소득 거주자에게는 최대 1.5%의 Medicare 할증 (MLS – Medicare Levy Surcharge)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 거주자는 Medicare Levy와 MLS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회계 연도에 외국인 거주자는 호주 원천 소득에 대해 아래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이중 과세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소득 | 세금 |
|-----------------------|--|
| \$0 - \$120,000 | 1달러당 32.5센트 |
| \$120,001 - \$180,000 | \$39,000 + \$12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37센트 |
| \$180,001 and over | \$61,200 + \$18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45센트 |

외국인 거주자는 Medicare Levy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개인세 관련 주요 질문

b.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개인은 매해 호주 회계 연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관해 소득세 신고 (annual tax return)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 마감일은 매년 10월 31일이고, Mazars와 같이 등록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마감일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TFN)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및 투자수입에 가장 높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지 않으려면 TFN이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c. 원천징수는 어떻게 관리 하나요?

호주 고용주는 급여 및 임금, 보너스와 같은 기타 지급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세 추정치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ATO에 신청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TFN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고 원천징수 세율 47%가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또한 투자 소득에 대해 비슷한 고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투자 소득을 지불하는 회사에게도 TFN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은 소득세 신고시 세금 공제 (tax credit)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d. 내 자산은 과세되나요?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호주의 양도소득세 (CGT - [Capital Gains Tax](#))가 적용됩니다. 호주 거주자의 경우, 자본이득이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발생하면, 모든 자본 손실을 적용한 후 자본이득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호주 자산에 대한 CGT만 지불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50%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주지 또는 Early Stage Innovation Company의 적격주식 (eligible share)의 매각 등 CGT 면제가 가능한 자본이득도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e. 세무상 결손금 (tax loss)은 어떻게 관리 하나요?

수익손실과 자본손실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 손실을 소급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본손실은 현재 연도 및 미래 연도의 자본이익에 대해서만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손실은 미래의 과세소득 (assessable income) 또는 자본이익에 대해서 모두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f. 직원 주식은 어떻게 관리 하나요?

고용이나 컨설팅으로 인하여 주식이나 옵션을 할인된 가격에 받을 경우, 관련자로서 취득하였더라도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시기는 주식의 조건과 고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신생 기업 (start-up companies)에서 종업원주식제도의 일환으로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받을 경우 세금을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기타 호주 세금 및 비용

이외에도 호주에서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세금과 비용이 있으며,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급여세 (Payroll tax)

급여가 기준금액을 초과 할 경우 주정부에서 고용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급여가 지불되는 주 (state)마다 상이하며 0%에서 6.85% 범위로 다양합니다.

인지세 (Transfer duty)

부동산 (mining tenement 포함), 영업권, 자동차, 또는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인지세는 거래된 자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장비용 (SGC -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고용주가 11%의 최소 연금 (Superannuation)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참고 : 고용주의 연금 납부액은 고용주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SGC 납부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사 (director) 개인에게 SGC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급부세 (Fringe benefits tax, FBT)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세금으로 차량, 주차장, 의료 보험, 사회공헌과 식사 지원비 및 직원대출 등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근로자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지급금의 한 형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급금이 근로자 재해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임금
-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각 주의 고용주들은 자신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고용 관리

호주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고용 및 인적 자원 (HR - Human Resource)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연방 (Federal) 및 주 (State)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근로법 (Fair Work Act)의 이해

공정근로법 2009 (Fair Work Act 2009, FWA)는 주 (State) 공무원과 같이 일부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 요건을 규정하는 연방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여러 기본권리를 규정합니다.

- **주당 최대 근무 시간 (maximum weekly hours):**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당 최대 38시간 및 적정 수준의 추가 근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annual leave):** 연간 4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고용 종료 시 잔여 휴가가 정산 지급됩니다.
- **병가/간병휴가 (personal carer's leave):** 10일의 유급 병가/간병휴가.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잔여 휴가는 고용 종료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기근속휴가 (long service leave):** 장기근속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10년 근속 후 장기근속휴가 8.667주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10년 근속하기 전에도 근무일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 (unpaid family and domestic leave):** 모든 근로자 (파트타임 및 캐주얼 근로자 포함)는 매년 5일간 무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public holidays):**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공휴일에 대한 보수는 받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 **해임 통보 (notice of termination):** 공정근로법 (Fair Work Act 2009)에 따르면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5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수당 (redundancy pay):** 근로자가 15명 이상인 법인에서 기존 업무가 축소/ 상실되어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 정리해고된 직원에게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4주에서 16주 사이입니다. 소규모 법인 (직원 수 15명 미만)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FairWork Information Statement:** 고용주가 모든 신입 사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parental leave):** 직원 당 최대 12개월의 무급 휴가 사용 및 추가로 12개월의 무급 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탄력근무제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특정 직원은 탄력근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회봉사휴가 (community service leave):** 응급상황이나 자연재해에 따른 자원봉사를 위한 무급 휴가 및 배심원 참가를 위한 휴가 (최대 10일까지 유급)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주는 다음 사항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정규 근무 시간 (ordinary hours) 임금에 대해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4 회계 연도에는 연금액이 임금의 11%이지만, 12%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7월 1일마다 0.5%씩 증가할 예정입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고용 관리

공정근로법 관련 주요 질문

공정근로법의 적용은 아래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Award 또는 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 직원에게 얼마를 지불해야합니까?
- 보관해두어야 하는 자료와 정보는 무엇입니까?

인사 관리 관련

호주의 인사 법률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시간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직원에게 관심을 표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기 진작, 참여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laws)

호주의 주법과 연방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해석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차별금지법은 연방법과 주법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법과 연방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하는 보호와 연방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호에는 차이가 있으며, 한 법률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법률에서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Modern Awards and Agreements

호주에는 Modern Awards를 기반으로 하는 고유한 고용 규정이 있습니다. Modern Awards는 최저 임금, 수당,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위약금,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범위의 최소 근로기준을 설정하는 Fair Work Commission의 고용 기준입니다.

호주에서 고용된 직원이 Modern Award가 적용되는 직종으로 고용된 경우 고용주는 해당 Modern Award의 최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Modern Award의 적용 범위는 산업 또는 직종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관리자가 아닌 역할의 대부분 직종은 Modern Award가 적용됩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일부 관리 직책도 적용됨).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Modern Award가 적용되는 경우 Modern Award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혹은 기타 관련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벌금 및 미지급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교섭계약 (Enterprise Bargaining Agreements, Agreement)은 노사간에 협상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공정근로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며 직원의 과반수가 계약에 동의하고 적용 가능한 Award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 (Better off overall test)인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인수 시 Agreement도 새로운 사업체로 함께 이전되니 호주에서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고용주는 Agreement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정부 인센티브

호주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중소기업 (SME - Small to Medium Enterprise) 부문 또한 호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 중 하나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혁신:** 연구 개발 관련 세제 혜택 ([R&D Tax Incentive](#))을 통해 R&D 비용에서 최대 43.5%의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시장으로 확장:** 수출시장개발보조금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으로 해외 마케팅 비용에서 최대 5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 협력:** 사업특기자 비자 ([The Business Talent Visa](#)) 및 사업주/투자자 비자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Visa](#))는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영주 비자 및 임시 비자를 제공합니다.

내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호주 정부는 기술 부문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부문이 정부 지원을 받는 유일한 부문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아래 리스트의 사업 부문 또한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
- 건축, 건설 및 엔지니어링
- 교육
-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 음식 및 음료
- 건강 및 의료 산업
- 제조업
-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 광산업
- 관광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이민 및 비자

모든 외국인은 호주에 입국하거나 취업을 할 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호주 정부의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심사합니다. 비자를 선택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및 처리 시간은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즈니스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시부족기술 (TSS) 비자 (Temporary skills shortage (TSS) visas)

임시부족기술 (TSS) 비자 (Temporary Skills Shortage (TSS) Visas)는 적절한 현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외에서 숙련된 직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임시부족기술 (TSS) 비자 시스템의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호주 (또는 해외) 고용주의 후원을 필요로 하며 비자 기간 동안 내무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우선 최근에 광고 및 채용에 노력을 기울여 현지의 노동 시장에서 고용을 시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직종은 STSOL (Short Term Skilled Occupations List)과 MLTSSL (Middle to Long Term Strategic Skills List) 두 가지 목록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두 리스트 모두 6개월마다 갱신됩니다;

- 직업군이 STSOL에 있는 외국인은 최대 기간 2년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4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군이 MLTSSL에 속한 경우 최대 기간 4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지명하는 경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최저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의 가족을 비자신청에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된 가족은 호주에서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 전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늘어났으며 영어 시험, 기술 평가, 건강 및 신원 조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이민 및 비자

기술기금부과금

Skilling Australians Fund (SAF) levy

지명 절차 중 하나로, 직원의 비자를 후원하는 기업은 해당 비자의 기간에 따라 SAF Levy를 납부해야 합니다. TSS 비자와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permanent employer sponsored visa) 모두에 적용됩니다.

스폰서의 연간 수익 규모에 따라 납부금액이 상이하며 수익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경우, 후원하는 직원 당 매년 1,800 달러를 납부, 영주 비자 신청 시 일회성으로 건 당 5,000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1,0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후원 직원 당 매년 1,200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영주비자 신청 시 일회성으로 건 당 3,000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기금부과금은 반드시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며 직원에게 인계할 수 없습니다.

단기업무 (단기 전문직) 비자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단기업무를 위해 호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단기업무 비자 ([Temporary Work \(Short Stay Activity\) Subclass 40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단기적인 전문업무에만 적합하며 주요 사항은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의 법인이 방문 목적을 명시한 서면 초대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 비자의 유효기간은 6주에서 3개월까지이며 제한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 최저 급여 요건은 없지만 고용주는 호주의 최소 고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소지자의 급여는 자국에서 자국통화로 지불됩니다.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호주의 이민 및 비자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민 관련 조언을 제공할 자격이 있고 면허가 있는 등록된 에이전트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비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려면 이민 전문 에이전트 (Registered Migration Agent)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등록된 이민 [Agent](#)를 추천할 수 있는 Mazars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호주에서의 사업 설립 지속가능성 관련 법률 및 권고사항

호주의 사업체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련된 법률 및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요구받습니다. 아래에는 호주에서 사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몇가지 법률 및 권장 사항입니다.

현대 노예제도 성명

호주의 사업체들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Modern Slavery Act 2018 에 따라 매년 현대 노예제도 성명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통합 연간 총매출이 1억 호주 달러 이상인 경우
- 해당 회계 연도에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호주 기업 혹은 해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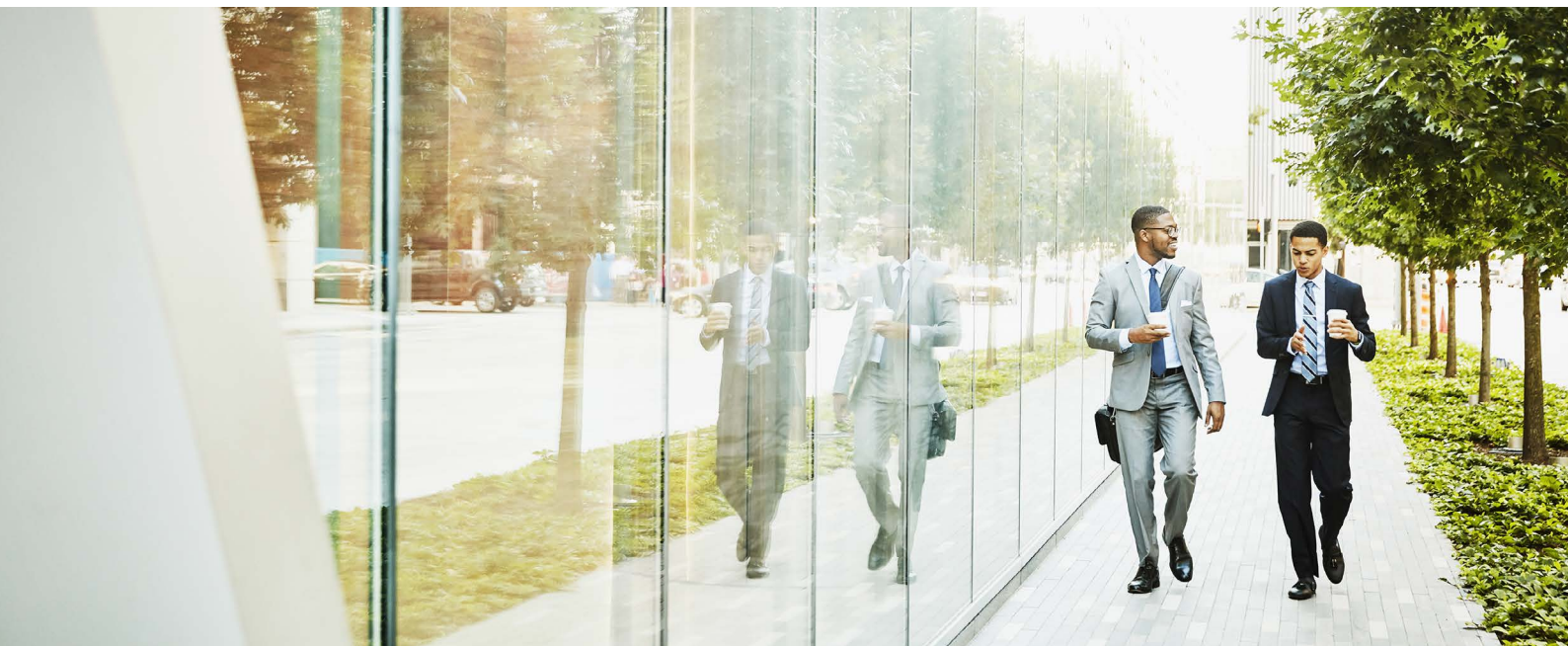
상장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공개 권고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권고사항 4판, 권고사항 7.4에서는 상장 기업이 환경 (기후 위험 포함) 또는 사회적 위험에 중대한 노출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업은 그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 (TCFD)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권장 사항을 고려하고, 기후 위험에 대한 노출이 상당한 경우 그에 따라 보고하도록 권장됩니다.

기후 관련 공개

호주 재무부는 현재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 기후 관련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통합 연간 총매출이 5,000만 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 통합 총 자산이 2,500만 호주 달러 이상인 경우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다음 단계 Mazars의 지원

모든 사업에는 항상 도전과 기회가 있습니다. 호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Mazars는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 감사, 세무 및 자문 회사로서 저희는 고객이 자신 있게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azars는 항상 고객과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라 권장사항과 지원을 맞춤 제공합니다.

저희의 기술과 전문성을 글로벌 관점 및 현지 지식과 결합하여 광범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zars는 고객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azars는 전문성과 우수한 서비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 어떤 규모의 고객에게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규모를 갖추고 동시에 차별화된 접근방식으로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zars와 함께하실 때 윤리적이고 적법한 최고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판단력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저희 존재의 이유이며 그 신뢰를 끊임없이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모든 업무에 있어 독립성, 책임감 및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접근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공정하고 번성하는 세상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주요 서비스

아웃소싱 및 가상 CFO

재무 기능을 위탁하면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할 수 있고 호주에서의 운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재무 위탁을 통해 호주 규정 및 법률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정확한 시기에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자문

회사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무 및 법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등 시작부터 철수 전략까지 사업체의 필요와 요청 사항의 심층 이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세무 자문

개인, 기업 및 신탁, 구조조정, 연결납세, 이전가격, 임직원 파견, 종업원주식제도, 간접세, 등 국내 및 국제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회계감사

감사, 보고, 기업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및 감사 서비스를 광범위한 산업 및 부문에서 제공합니다.

재무 자문

사업 평가 (business valuation), 실사 (due diligence), 자본 조달 (capital raising), 초기공모 (initial public offer)에서부터 자산매각 (asset sales) 및 기업

인수 (acquisition) 등의 영역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및 개인 용자 준비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연금

노후연금의 세제 혜택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을 제공하며 SMSF 신탁재산 관리인 (SMSF trustees)의 멘토로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금 법률

체계 안에서 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SMSF 설립, 연간 SMSF 관리 및 SMSF에 관한 감사와 규정 준수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zars 글로벌 인프라 금융

Mazars의 글로벌 인프라 금융 (Global Infrastructure Finance) 부문은 인프라 산업의 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자 및 금융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무 모델 개발에서부터 모델 감사, 세금, 회계, 전문 교육을 포함한 자문 및 가치평가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산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계적으로 통합된 최고 수준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R 및 IR 자문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인사 및 노사관계와 관련된 전략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용을 시작으로 고용의 전 과정에서 조언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 심판원 (employment tribunal)에서 노사 관계 전문 대리인으로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련 기타 고객 요청에 응답하여 고용 계약서 작성, 계약 협상, 변호, 성과 관리, 리더십 교육 및 맞춤형 교육 패키지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급망 인식, 탄소 매핑,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예: IFRS S1/S2) 에 따른 기후 변화 위험 평가 보고 또는 다양성 증진을 통한 해법 제시 - Mazars는 호주 농지 소유자 이니셔티브, 보고 및 보증, 전략 및 실사, 구현 및 전환, 지속가능한 재무를 포함한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zars는 사업의 분야와 규모를 막론하고 글로벌 경험과 현지 전문지식을 통해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mazars.com.au으로 연락 주십시오.

Contacts

Brisbane

Level 11, 307 Queen Street
Brisbane Qld 4000
Tel: +61 7 3218 3900

Melbourne

Level 5, 600 Bourke Street
Melbourne Vic 3000
Tel: +61 3 9252 0800

Sydney

Level 12, 90 Arthur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Tel: +61 2 9922 1166

Mazars is an internationally integrated partnership, specialising in audit, accountancy,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Operating in nearly 100 countries and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we draw on the expertise of more than 47,000 professionals – 30,000+ in Mazars' integrated partnership and 17,000+ via the Mazars North America Alliance – to assist clients of all sizes at every stage in their development.

*Where permitted under applicable country laws

© Mazars 2023

Published: November 2023

mazars.com.au

mazars